

상속 및 증여세의 대체적 폐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임상수**, 김석진***, 김진수****, 이현철*****

목 차	
I. 서 론	217
II. 스웨덴	219
1. 상속 및 증여세 연혁	
2. 상속 및 증여세 현황	
3. 상속 및 증여세 폐지 이후 경제적 성과	
III. 이스라엘	226
1. 상속 및 증여세 현황	
2. 상속 및 증여세 폐지 이후 경제적 성과	
IV. 캐나다	232
1. 상속 및 증여세 연혁	
2. 상속 및 증여세의 현황	
3. 상속 및 증여세 이후의 경제적 성과	
V. 호 주	240
1. 상속 및 증여세 현황	
2. 상속 및 증여세 폐지 이후 경제적 성과	
VI. 결 론	247

* 본 연구는 2022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수주하여 수행한 연구용역인 김석진 외(202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승계 개선방안”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주저자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공동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투고일 : 2024. 9. 17. 1차수정일 : 2024. 10. 20. 게재확정일 : 2024. 11. 8.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속 및 증여세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국가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있는 해외국가(i.e., 스웨덴, 이스라엘, 캐나다 및 호주) 사례를 고찰한다. 본 사례연구는 해당 사례 국가의 대체적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위해 기존 문헌과 해당 국가와 세계 주요 조세 및 유관 경제기구의 계량적 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고찰 분석한다.

고찰한 모든 사례 국가의 상속·증여세의 대안적 폐지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모든 사례 국가가 상속·증여세의 폐지 이후, 정부 총수입과 세수 상의 유의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영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본 사례연구는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속·증여세의 폐지는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중의 하나로 작용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규모가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하게도, 본 사례연구의 모든 대상 국가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국가균형발전을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된 사례 국가의 상속·증여세의 대체적 폐지와 관련한 혁신적인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수도권 집중화가 50%를 이미 상회한 한국의 심각한 국가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통찰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제어** : 상속 및 증여세, 자본이득세, 대체적 폐지, 경제적 성과, 사례연구

I. 서 론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수도권 인구 분산’에 관한 최초의 정책이 나온 1966년 이후, 수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사회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적 시도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는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¹⁾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고안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력히 방증한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계속 방치한다면, 흔히 회자되는 ‘지방 붕괴 혹은 소멸’은 단순한 언어적 위협을 넘어 현실에 직면할 수 있으며, 수도권의 초고도 비만과 지방의 고사에 따른 국가 비효율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의 타파를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으로써 지방소재 기업들의 승계 조건을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²⁾

한편, 최근 과도한 상속세에 대해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승계 시 비수도권부터 선제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의 지역별 차등화는 수도권에 소재한 혁신기업과 한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비용 및 공간

1) 이현철 외 3인,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차등화와 국가균형발전”, 『기업과 혁신연구』 제47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4, 33~48면 ; 김진수 외 3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지역별 차등 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경영연구』 제38권, 한국산업경영학회, 2023, 119~136면.

2) 이현철 외 3인, 위의 논문, 2024, 1~2면.

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업이 이전하는 지방에는 투자, 고용 및 소득이 창출되어 인구가 유입되고 인재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해외기업의 지방 유치와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의 글로벌 인지도 및 마인드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배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에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의 대체적 폐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제적으로 달성한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승계 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사례연구는 지역 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업승계제도 방향의 모색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폐지가 국가 경제성장과 세수 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찰적 분석을 수행한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는 유럽의 스웨덴과 중동지역의 이스라엘을 먼저 고찰하고, 북미권의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주의 호주를 차례로 고찰 분석한다. 이들 네 국가는 모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국가균형발전을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기도 한 상속 및 증여세율과 기업투자 및 국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무 및 학술연구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폐지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 분석하는 해외국가 사례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상속·증여세의 폐지를 통해 자본의 해외유출 방지, 기업투자의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에 발전적인 성과를 창출해오고 있다. 또한, 스웨덴, 캐나다 및 호주는 한국과 경제력 규모가 비슷한 국가로서 본 주제에 대한 설득력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적 측면에서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IT,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같은

3) 이현철 외 3인, 앞의 논문, 2024, 2면.

하이테크로지 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로서 사례 고찰 대상국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상속 및 증여세의 폐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실제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례적 증거는 한국 사회의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상속·증여세의 폐지 또는 감면 같은 차별적 배려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제도적 정비는 비수도권에서의 경제·사회적 심각한 불균형을 완화시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속가능한 상생 및 공존 번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국가 및 시대적 사명의 완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은 먼저 스웨덴의 상속·증여세의 혁신적 폐지와 대안적 세제 시행의 특징과 효과를 고찰한다. III, IV 및 V장은 이스라엘, 캐나다 및 호주의 사례를 각각 고찰한다. VI장은 사례분석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스웨덴

1. 상속 및 증여세 연혁

스웨덴(Sweden) 정부는 국가의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권 보호 및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에 70%에 육박했던 상속 및 증여세를 전면 폐지하였다. 상속·증여세는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형평성(equality)의 논리가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높은 조세부담과 관대한 복지정책으로 형평성에 대한 국가적 가중치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다. 그럼에도 국가 전체 세목 중에서 가장 형평 가치에 민감한 상속과 증여세를

폐지한 것은 이 나라의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형평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스웨덴의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세제개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스웨덴의 상속·증여 세제의 역사적 변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1> 스웨덴 상속 및 증여세 주요 변천내용

연도	주요 변천내용
1884	취득상속세(inheritance tax) 도입
1915	현대적 의미의 증여세(gift tax) 최초 도입
1933	정부는 유산상속세(estate tax)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무산. 대신 기존 상속 및 증여세 부담 강화
1934	정부는 유산상속세 도입을 재시도하였으나 의회에서 무산. 대신 부유세(wealth tax) 도입
1948	유산상속세 시행
1959	유산상속세 폐지, 대신 취득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증가
2004	배우자에게는 취득상속세 폐지
2005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폐지

자료 : 현진권, 2010.⁴⁾

2. 상속 및 증여세 현황

스웨덴은 2005년에 기존의 상속·증여세를 전면 폐지하였다.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승계를 통한 과세이연(rollover relief)을 허용하고 있다. 소득세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구체적 과세는 아래와 같다.

4) 현진권,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 아주대학교 세미나 논문집, 2010, 5면.

- ① 소득은 지방세와 국세 합쳐서 최고 58%까지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구체적으로 지방세율 30~33%와 국세 25%가 병행 과세됨.
- ②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없고, 30%의 국세 단일세율로 과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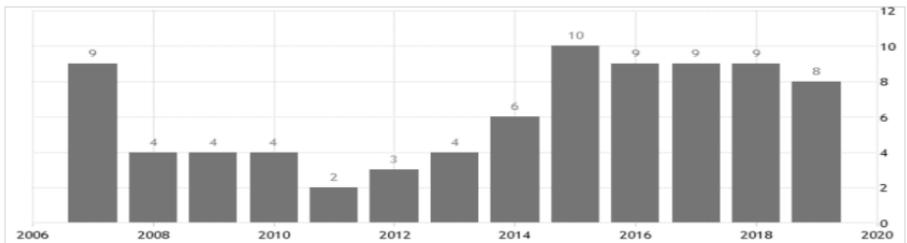
그러므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함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형평성보다는 국가 경제성장에 정책의 방점을 두는 기업 및 부 친화적 정책 기조(wealth friendly policy)의 강화로 평가된다.⁵⁾

3. 상속 및 증여세 폐지 이후 경제적 성과

상속 및 증여세의 전면 폐지 이후, 스웨덴 기업의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 세수 상의 손실 유무를 살펴본다. 스웨덴의 기업친화적인 상속·증여 관련 세제는 국가 경제성장애의 기여는 물론, 매년 국가경쟁력을 상위권에 위치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140여개 국가의 경쟁력 순위에서, 스웨덴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스웨덴 국가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

(단위 : 순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rading Economics 재인용.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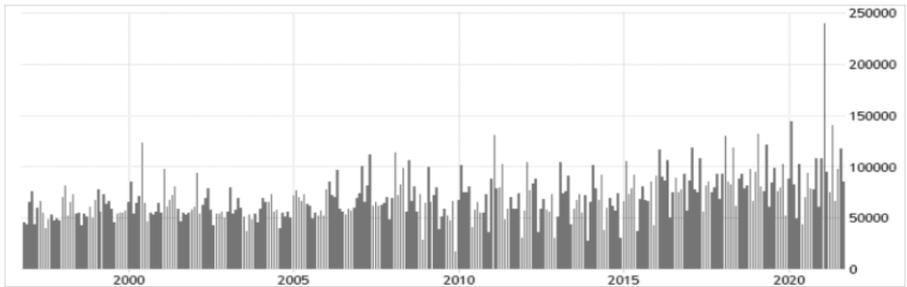
5) 현진권, 앞의 논문, 4면.

6) Trading Economics, “Sweden Rank”, <https://tradingeconomics.com/sweden/indicators> (검색일 : 2021. 10. 10.).

상속·증여세 폐지 이후 스웨덴의 거시경제적 성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에서 상속·증여세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스웨덴 정부의 총수입의 유의한 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3]은 비슷한 시기 스웨덴 정부의 총지출은 지속적인 우상향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스웨덴 정부총수입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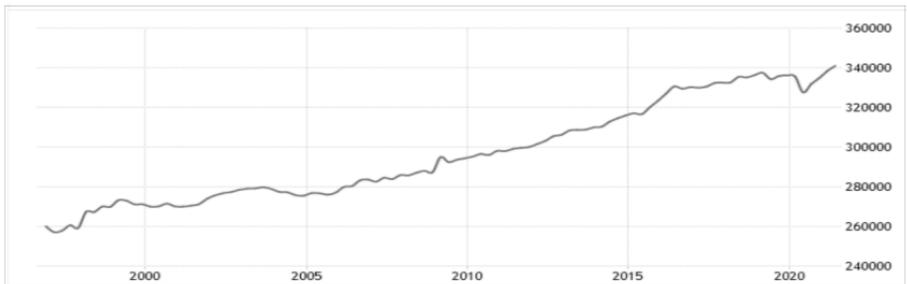
(단위 : SEM million)



자료 :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Trading Economics 재인용.⁷⁾

[그림 3] 스웨덴 정부총지출 연도별 추이

(단위 : SEM million)



자료 : Statistics Sweden, Trading Economics 재인용.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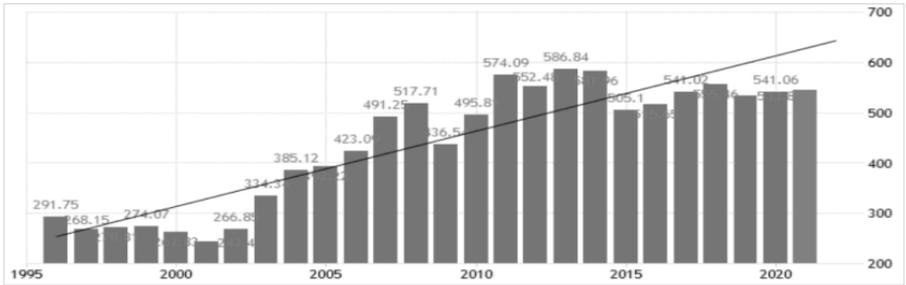
7) Trading Economics, “Sweden government Revenues”, <https://tradingeconomics.com/sweden/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0.).

8) Trading Economics, “Sweden government spending”, <https://tradingeconomics.com/sweden/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0.).

[그림 4]는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GDP의 지속적 성장은 2005년 상속·증여세의 폐지가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고, 기업투자의 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국가 GDP 총액의 지속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국민 개개인 경제적 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그림 4] 스웨덴 GDP 연도별 추이

(단위 : USD billion)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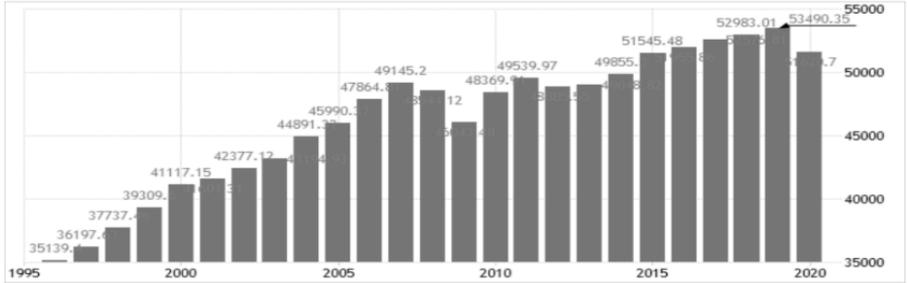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재인용.⁹⁾

이와 관련하여, [그림 5]는 1900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GDP(GDP per capita)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도의 1인당 GDP는 35,139달러이지만, 2005년에 약 46,000달러 기록하면서 2020년 말 현재 기준으로 51,620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고용률도 소폭이지만 개선되는 위상향의 모습을 [그림 6]을 통해 관찰할 수 있으므로, 상속·증여세의 폐지로 인한 실업의 악화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Trading Economics, “Sweden GDP”, <https://tradingeconomics.com/sweden/indicators> (검색일 : 2021. 10. 10.).

[그림 5] 스웨덴 1인당 GDP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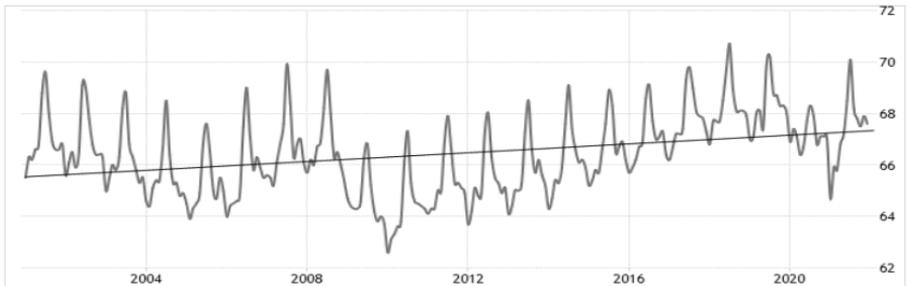
(단위 : USD)



자료 :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재인용.¹⁰⁾

[그림 6] 스웨덴 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Statistics Sweden, Trading Economics 재인용.¹¹⁾

세수 측면에서, 2005년 상속·증여세의 폐지는 실제적인 손실은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2>는 1969년부터 2018년까지 스웨덴의 GDP 대비 총세금 징수수입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10) Trading Economics, “Sweden GDP per capita”, <https://tradingeconomics.com/sweden/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0.).

11) Trading Economics, “Sweden Employment rate”, <https://tradingeconomics.com/sweden/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0.).

<표 2> 스웨덴 GDP 대비 총세수 연도별 추이

(단위 : %)

연도	세수	연도	세수
1969	35.221	1994	44.305
1970	35.160	1995	45.307
1971	35.886	1996	46.955
1972	37.116	1997	47.843
1973	36.383	1998	47.878
1974	37.433	1999	48.385
1975	38.347	2000	48.773
1976	42.116	2001	46.716
1977	44.102	2002	45.030
1978	44.455	2003	45.411
1979	43.301	2004	45.666
1980	43.131	2005	46.694
1981	44.379	2006	46.08
1982	43.420	2007	45.095
1983	44.076	2008	44.142
1984	43.694	2009	43.867
1985	44.146	2010	43.058
1986	46.362	2011	42.134
1987	48.837	2012	42.324
1988	48.142	2013	42.695
1989	48.650	2014	42.383
1990	48.978	2015	42.85
1991	47.086	2016	44.309
1992	44.681	2017	44.307
1993	44.041	2018	43.921

자료 : OECD Tax Revenue.¹²⁾

Ⅲ. 이스라엘

1. 상속 및 증여세 현황

이스라엘(Israel)에서 상속·증여세는 1949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나, 1981년에 국가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외국을 불문하고 전면 폐지하였다. 상속이거나 증여든 간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수령인(recipient)에게는 상속 혹은 증여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자산을 상속·증여 이후에, 상속·증여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는 25~50% 사이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고 있다. 영속성 원칙(continuity principle)에 기반한 이 과세는 상속·증여되는 자산이 수령인의 소유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The Jerusalem Post).¹³⁾

2. 상속 및 증여세 폐지 이후 경제적 성과

여기서는 상속 및 증여세 폐지 이후 이스라엘 기업의 투자 촉진과 국가 경제성장애의 기여를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이 나라의 주요 경제적 성과와 세수 상의 손실 유무를 고찰한다. 전체적으로, 2019년 말 기준, 이스라엘의 명목 GDP는 3,423억 달러, 1인당 GDP는 37,831달러로 37개국 OECD 전체

12) OECD Data, "Taxrevenu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tax-revenue.html>
(검색일 : 2021.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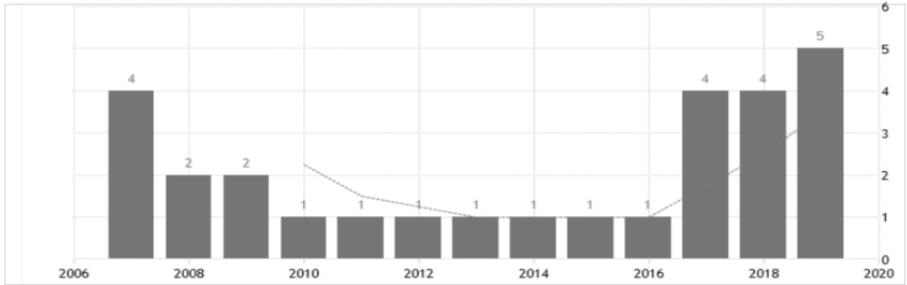
13) The Jerusalem Post, "All News from Israel, the Middle East and the Jewish World", <https://www.jpost.com/>(검색일 : 2021. 10. 11.).

회원국가 중 15위권에 위치하고 있다(OECD MEI, 2019).¹⁴⁾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상속·증여세제는 사회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은 물론 이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게 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140여개 국가의 경쟁력 순위에서 2006년 이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7]에서 이스라엘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이스라엘 국가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

(단위 : 순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rading Economics 재인용.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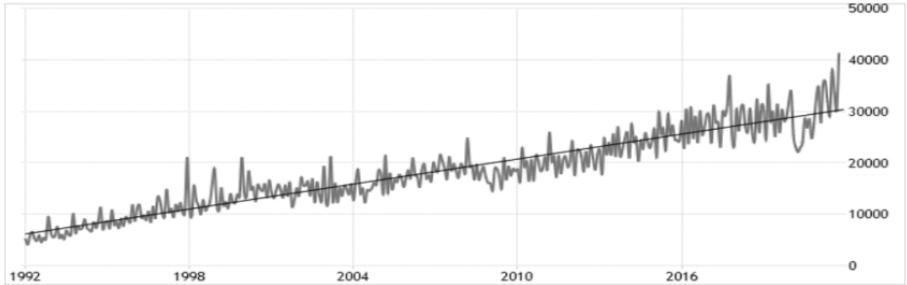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이후 이스라엘의 경제적 성과의 내용은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속·증여세의 폐지 이후 이스라엘 정부총수입의 유의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8]은 자료수집이 가능한 1992년 초반부터 2021년 7월까지 이스라엘 정부총수입의 추이는 오히려 점진적인 증가하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림 9]는 비슷한 시기의 정부의 총지출 또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도시하고 있다.

14) OECD MEI, 2019.

15) Trading Economics, "Israel Rank", <https://tradingeconomics.com/israel/indicators> (검색일 : 2021. 10. 11.).

[그림 8] 이스라엘 정부총수입 연도별 추이

(단위 : ILS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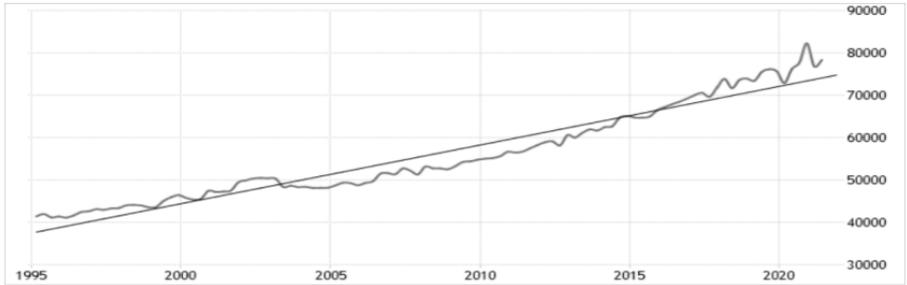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Israel Ministry of Finance, Trading Economics 재인용.¹⁶⁾

[그림 9] 이스라엘 정부총지출 연도별 추이

(단위 : ILS million)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srael, Trading Economics 재인용.¹⁷⁾

국가 경제성장예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그림 10]에서 국민총생산(GDP) 총액이 상속·증여세가 폐지된 1980년 초중반부터 2020년 말까지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세의 폐지가 기업활동과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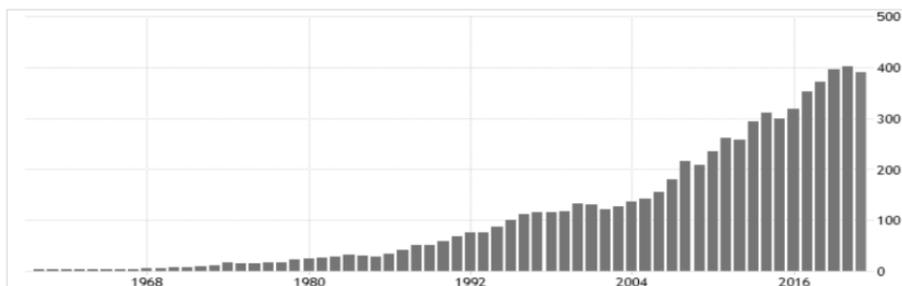
16) Trading Economics, “Israel Government Revenues”, <https://tradingeconomics.com/israel/government-revenues>(검색일 : 2021. 10. 11.).

17) Trading Economics, “Israel Government Spending”, <https://tradingeconomics.com/israel/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1.).

경제성장을 위한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고, 기업투자의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으로 GDP 총액은 401.9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경제 총 GDP의 0.36%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이러한 GDP 총액의 성장을 통해 파악 가능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은 자연스럽게 국민 개개인 경제적 부의 증진과 삶의 질 또한, 실질적으로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00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GDP의 지속적인 위상향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 11]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이스라엘 GDP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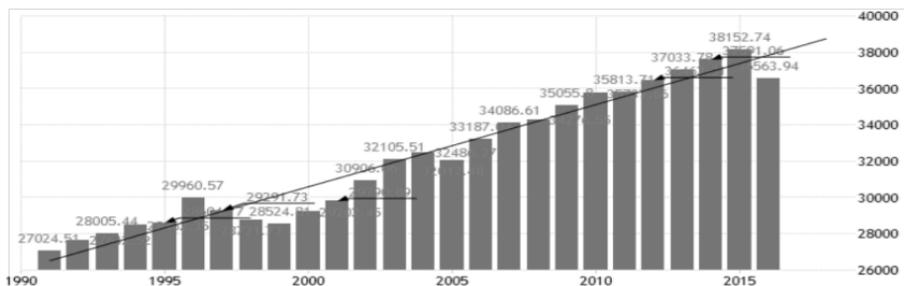
(단위 : USD billion)



자료 :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재인용.¹⁸⁾

[그림 11] 이스라엘 1인당 GDP 연도별 추이

(단위 : USD)



18) Trading Economics, “Israel GDP”, <https://tradingeconomics.com/israel/indicators> (검색일 : 2021.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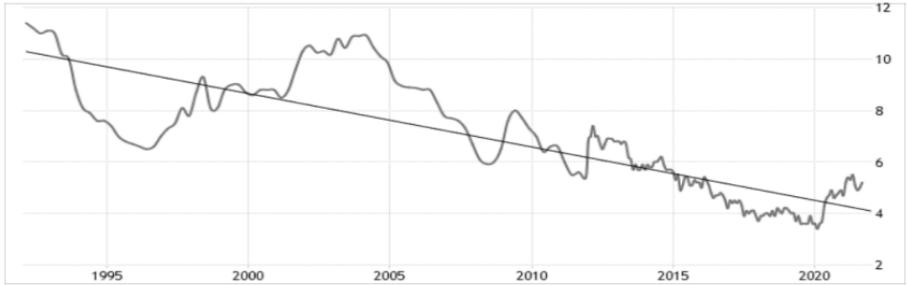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재인용.¹⁹⁾

[그림 12]는 199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이스라엘의 계절조정된 실업률의 추이이다. 1990년대 후반의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에 걸쳐 실업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타 기업지원제도와 함께, 상속·증여세의 전면폐지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로 인한 실업률의 감소에도 실제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2] 이스라엘 계절조정된 실업률 연도별 추이

(단위 : %)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Trading Economics 재인용.²⁰⁾

상속 및 증여세의 폐지가 세수 상 손실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 세제의 폐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게 하여 GDP 대비 세수 수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1969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라엘의 GDP 대비 총세금 수입의 연도별 현황을 제시하는 <표 3>에서 잘 파악할 수 있다.

19) Trading Economics, "Israel GDP per capita", <https://tradingeconomics.com/israel/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1.).

20) Trading Economics, "Israel Unemployment rate", <https://tradingeconomics.com/israel/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1.).

<표 3> 이스라엘 GDP 대비 총세수 연도별 추이

(단위 : %)

연도	총세수	연도	총세수
1995	35.283	2007	34.161
1996	34.706	2008	31.906
1997	35.329	2009	29.823
1998	34.285	2010	30.695
1999	34.140	2011	30.988
2000	34.796	2012	30.053
2001	34.650	2013	30.794
2002	33.869	2014	30.988
2003	33.166	2015	31.236
2004	33.261	2016	31.183
2005	33.665	2017	32.544
2006	34.223	2018	30.946

자료 : OECD Tax Revenue.²¹⁾

21) OECD Data, "Taxrevenu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tax-revenue.html>
(검색일 : 2021. 10. 11.).

IV. 캐 나 다

1. 상속 및 증여세 연혁

캐나다(Canada)는 1892년부터 1903년 사이에 모든 주에서 상속세를 도입하였다. 상속 관련 세금이 1913년에는 주 세수의 40%까지 달할 정도로 세수 권한이 연방정부로 옮겨지던 1946년도까지 주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속세 도입의 표면적 이유는 역진적이고 간접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나 누진적이고 직접적인 조세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정치적인 명분과 조세 정책적 목적이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부족했던 세수를 메꾸어야 했다. 또한, 주에서는 개인 사망 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서, 연방정부에서는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상속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과세에서 상속 및 증여세의 비중이 1.7%를 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과세 복잡성과 징수 비용 등도 작용해서 연방정부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쪽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연방정부는 주정부 상속세율의 많게는 50%까지 징세하여 일정 부분을 주정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주정부는 손실을 감수하는 처지이고, 주 간 조세 경쟁도 우려되었다. 이에 앨버타(Alberta)주가 캐나다에서 최초로 1972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여 상속세 천국으로 탄생하였고, 수반하는 징수 비용 대비 상속세 징수액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주도 1973년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 이어 노바 스코샤(Nova Scotia)주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다른 주로 기업들의 투자가 이동될 것을 우려하여 1973년도 2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는 1973년 12월 31일, 뉴펀들랜드(Newfoundland)주는 1974년 4월 9일에 상속·증여세를 전면 폐지하였다.

연방정부와의 징수협정 종료 후(1974)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는 1977년도에 가족농업과 가업이 외부로 팔려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자본의 축적과 유지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고, 동년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 매니토바(Manitoba)주 또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 온타리오(Ontario)주 역시 상속·증여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막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1979년 이를 폐지하였다. 최종적으로, 1985년 4월 23일에 퀘벡(Quebec)주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함으로써 캐나다는 상속·증여세가 전면 폐지된 국가가 되었다(고영환, 2019).²²⁾

2. 상속 및 증여세의 현황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폐지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상속·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대안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재산의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 의제하여, 무상이전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배우자 간 무상이전에 한해 생존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정유석, 2009).²³⁾ <표 4>는 2019년 현재, 각 주별 개인의 최대한계소득 세율(maximum personal marginal income tax rates)의 현황을 제시한다.

22) 고영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캐나다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관련 연구”, 한-캐나다 비즈니스 협회 훈련보고서, 2019, 7~52면.

23)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7집, 한국국제회계학회, 163~183, 2009, 7면.

〈표 4〉 캐나다 주별 최대한계소득세율

(단위 : %)

Provinces	Ordinary income (경상소득)	Eligible dividends (적격배당금)	Ordinary dividends (정상배당금)	Capital gains (자본이득)
Alberta	48.00	31.71	42.47	24.00
British Columbia	49.80	31.44	44.64	24.90
Manitoba	50.40	37.78	46.67	25.20
New Brunswick	53.30	33.51	47.75	26.65
Newfoundland	51.30	42.61	44.59	25.65
Nova Scotia	54.00	41.58	48.27	27.00
Ontario	53.53	39.34	47.40	26.76
Prince Edward Island	51.37	34.22	45.23	25.69
Quebec	53.31	40.00	46.25	26.65
Saskatchewan	47.50	29.64	40.37	23.75

주 : Ordinary income(경상소득)에 급여, 이자, 사업소득은 포함되지만, 캐나다인의 배당금과 자본이득은 포함되지 않음. Eligible dividends(적격배당금)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익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실질적 과세대상 배당금을 말함.²⁴⁾

3. 상속 및 증여세 이후의 경제적 성과

상속 및 증여세의 전면 폐지는 캐나다 기업의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2020년 말 기준, 캐나다의 명목 GDP는 1,883,487백만 달러(세계순위 9위)이고 1인당 GDP는 52,791달러로, 세계 9위와 15위에 각각 위치한다(IMF, 2019).²⁵⁾ 캐나다의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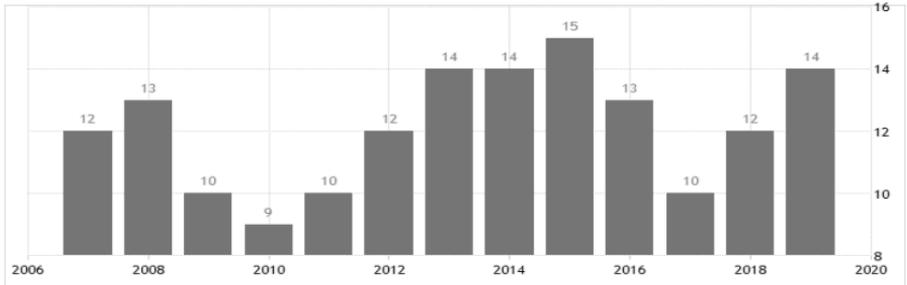
24)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9 자료를 참조함.

25) IMF, “Six Charts on Canada’s Economic Outlook for 2019”, <https://www.statcan.gc.ca/en/start>(검색일 : 2021. 10. 15.).

신적이고 선진적인 상속·증여 세제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캐나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구체적 모습은 World Economic Forum이 2006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140여 국가의 경쟁력 순위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13]은 캐나다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13] 캐나다 국가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

(단위 :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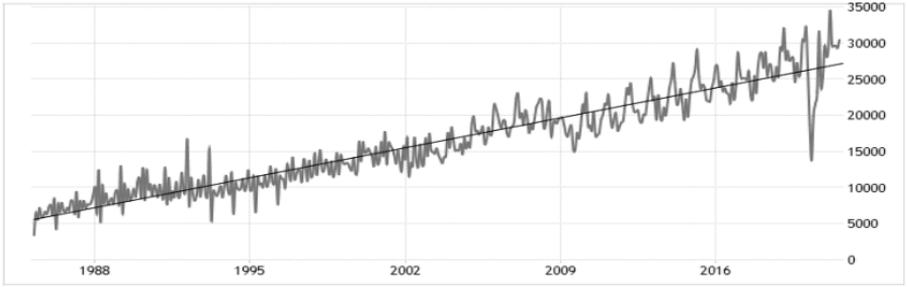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rading Economics 재인용.²⁶⁾

무엇보다도, 캐나다는 상속·증여세의 폐지로 인해 정부총수입의 유의한 감소는 없다. 자료수집이 가능한 1980년 초반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총수입의 추이는 점진적인 우상향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1960년 초반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정부총지출 역시 연도별 꾸준한 우상향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와 [그림 15]로부터 상속·증여세의 폐지가 정부총수입의 유의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6) Trading Economics, “Canada Rank”, <https://tradingeconomics.com/canada/indicators> (검색일 : 2021. 10. 15.).

[그림 14] 캐나다 정부총수입 연도별 추이

(단위 : CAD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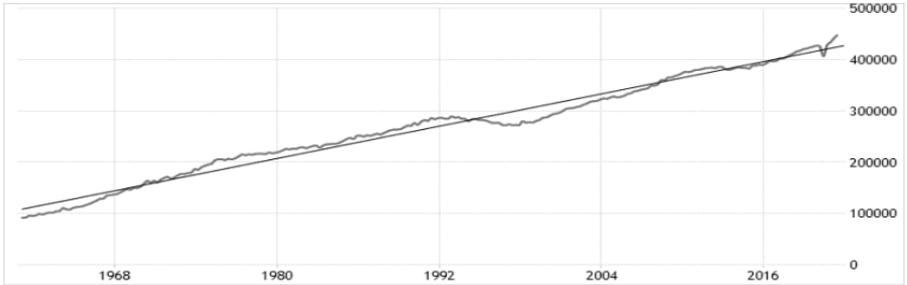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rading economics 재인용.²⁷⁾

[그림 15] 캐나다 정부총지출 연도별 추이

(단위 : CAD million)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Statistics Canada, Trading Economics 재인용.²⁸⁾

[그림 16]은 지난 50년여 동안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는데, 이는 동기간 국가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세 폐지가 경제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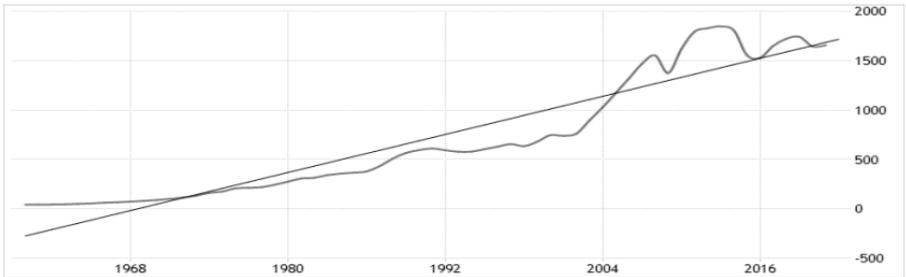
27) Trading Economics, “Canada Government Revenues”, <https://tradingeconomics.com/canada/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5.).

28) Trading Economics, “Canada Government Spending”, <https://tradingeconomics.com/canada/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5.).

하였음을 대변해 주는 그래프이다. 특히, 상속·증여세 폐지가 활발히 진행된 1970년대에도 국가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음을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GDP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의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17]은 동기간 1인당 GDP의 변화 추이를 도시하고 있다. 1990년 중반에 보이는 다소 큰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의 국가 GDP 연도별 추이와 유사하게, 상속·증여세 폐지가 활발한 1970년대에도 1인당 GDP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캐나다 GDP 연도별 추이

(단위 : USD b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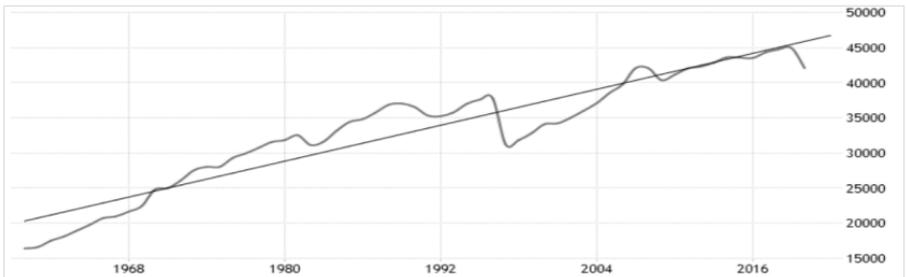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재인용.²⁹⁾

[그림 17] 캐나다 1인당 GDP 연도별 추이

(단위 : USD)



29) Trading Economics, “Canada GDP”, <https://tradingeconomics.com/canada/indicators> (검색일 : 2021. 10. 15.).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재인용.³⁰⁾

이렇듯 동기간 국가 경제의 견실한 성장은 자국민의 고용률 신장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그림 1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캐나다 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Statistics Canada, Trading Economics 재인용.³¹⁾

캐나다에서 상속·증여세의 폐지는 국가의 세수에 있어서 유의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의 결과로 GDP 대비 세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1969년부터 2018년까지 캐나다 GDP 대비 총세수의 연도별 현황을 제시하는 <표 5>에서 잘 파악할 수 있다.

30) Trading Economics, “Canada GDP per capita”, <https://tradingeconomics.com/canada/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5.).

31) Trading Economics, “Canada Employment”, <https://tradingeconomics.com/canada/indicators>(검색일 : 2021. 10. 15.).

<표 5> 캐나다 GDP 대비 총세수 연도별 추이

(단위 : %)

연도	총세수	연도	총세수
1969	29.865	1994	34.403
1970	29.881	1995	34.628
1971	29.417	1996	34.941
1972	29.934	1997	35.791
1973	29.530	1998	35.711
1974	32.0360	1999	35.487
1975	31.136	2000	34.673
1976	30.576	2001	34.085
1977	29.825	2002	33.081
1978	29.555	2003	32.700
1979	29.341	2004	32.713
1980	30.322	2005	32.661
1981	32.511	2006	32.725
1982	32.323	2007	32.495
1983	31.761	2008	31.235
1984	31.709	2009	32.346
1985	31.613	2010	31.007
1986	32.352	2011	30.803
1987	33.313	2012	31.177
1988	33.032	2013	31.132
1989	34.126	2014	31.266
1990	35.072	2015	32.820
1991	35.503	2016	33.258
1992	35.067	2017	33.114
1993	34.444	2018	33.219

자료 : OECD Tax Revenue.³²⁾

V. 호 주

1. 상속 및 증여세 현황

호주(Australia)는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상속 및 증여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받는 단계에서는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상속인의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고 있다. 증여의 경우는 유상양도로 의제하여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 시점에서 과세하고 있다(전태영·이윤주, 2011).³³⁾ 이러한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과세이연은 유언 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전된 자산에만 적용 가능하다(정유석, 2009).³⁴⁾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별도 분류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단계 최고 54%의 누진적인 소득세의 한계세율로 과세한다. 장기보유에 따른 과세금의 누적효과를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최고 50%까지 자본이득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1992년부터 가족 간의 계약에 따른 상속·증여 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정유석, 2009).³⁵⁾

32) OECD Data, "Taxrevenu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tax-revenue.html>
(검색일 : 2021. 10. 15.).

33) 전태영·이윤주, "가족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38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27면.

34) 정유석, 앞의 논문,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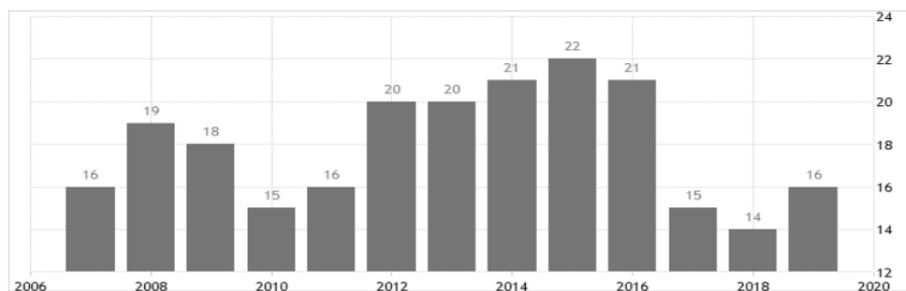
35) 정유석, 위의 논문, 9면.

2. 상속 및 증여세 폐지 이후 경제적 성과

호주의 상속 및 증여세의 폐지 이후 주요 경제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World Economic Forum이 2006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경쟁력 순위에서 항상 20위권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림 19]는 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작성, 발표하는 호주의 국제경쟁력 순위의 연도별 상황을 도시하고 있다. 호주는 상속·증여세 폐지를 통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9] 호주 국가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

(단위 : 순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rading Economics 재인용.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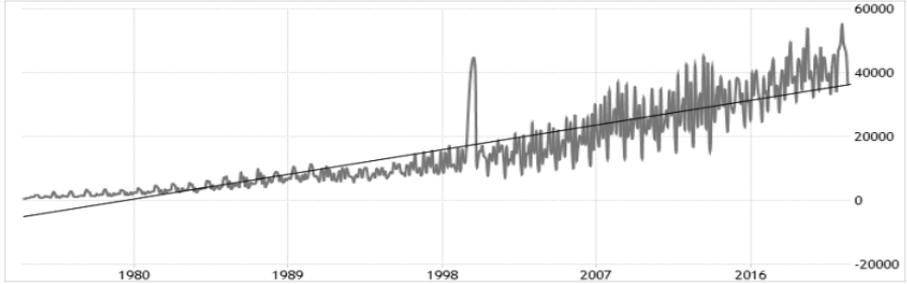
[그림 20]은 호주 정부의 총수입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1970년 초반부터 2021년 8월까지 정부총수입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속·증여세 폐지가 한창 진행된 기간(1974~1984)에도 정부총수입의 실질적인 감소는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완전히 폐지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총수입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2000년 초

36) Trading Economics, "Australia Rank", <https://tradingeconomics.com/australia/indicators> (검색일 : 2021. 11. 5.).

반 이후 이러한 상향추세는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림 20] 호주 정부총수입 연도별 추이

(단위 : AUD million)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

자료 :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 Trading Economics 재인용.³⁷⁾

같은 맥락에서, [그림 21]이 보여주는 1960년 초반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정부총지출은 상속·증여세가 전면 폐지된 1980년 중반에는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슷한 기간 정부총지출의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 폐지로 인한 정부총수입의 유의한 감소는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1] 호주 정부총지출 연도별 추이

(단위 : AUD million)



37) Trading Economics, “Australia Government Revenues”, <https://tradingeconomics.com/australia/indicators>(검색일 : 2021. 1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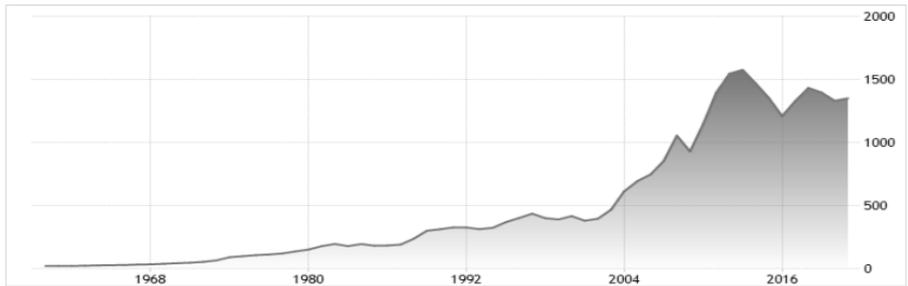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rading Economics 재인용.³⁸⁾

[그림 22]는 1960년 초반부터 2020년 말까지, 호주 경제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 말 기준으로 측정된 실질 GDP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가 폐지된 1980년 중반 이후부터, GDP의 성장세는 그 이전보다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1990년 후반부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세 폐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임을 대변해 준다.

[그림 22] 호주 GDP 연도별 추이

(단위 : USD billion)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재인용.³⁹⁾

이러한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의 증진과 삶의 질의 지속적인 향상도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측정된 동기간 1인당 GDP를 도시해 주는 [그림 23]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질 GDP의 동기간 변화추이와 유사하게, 상속·증여세가 폐지된 1980년 중반 이후의 1인당 실질 GDP의 상승세는 이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

38) Trading Economics, “Australia Government Spending”, <https://tradingeconomics.com/australia/indicators>(검색일 : 2021. 11. 5.).

39) Trading Economics, “Australia GDP”, <https://tradingeconomics.com/australia/indicators> (검색일 : 2021. 11. 5.).

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초반부터 그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호주 1인당 GDP 연도별 추이

(단위 :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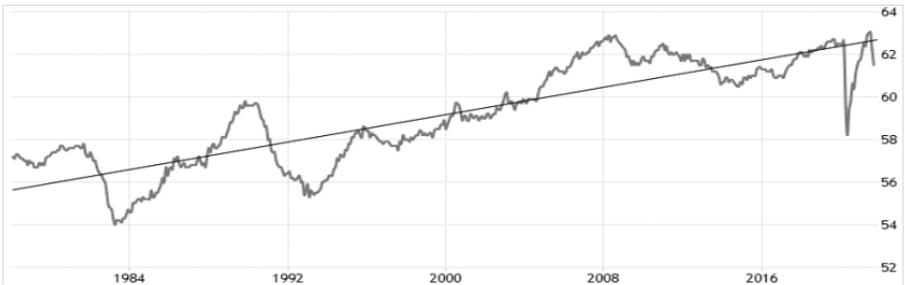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재인용.⁴⁰⁾

실질 GDP와 1인당 실질 GDP의 연도별 추이를 통해 확인한 호주의 경제 성장은 자국민의 고용률 신장에도 실제적으로 기여하였음을 [그림 24]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상속·증여세가 폐지된 1980년 중반 이후의 고용률은 그 이전의 고용률보다 실질적으로 더 개선되는 우상향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호주 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



40) Trading Economics, "Australia GDP per capita", <https://tradingeconomics.com/australia/indicators>(검색일 : 2021. 11. 5.).

주 : 검은색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rading Economics 재인용.⁴¹⁾

이러한 고용률 개선의 모습은 1990년 초반에 단기간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가, 곧바로 고용률이 다시 개선되면서 202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62.10%까지 지속적인 상승향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외적으로, 2020년 초반에 관찰되는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충격이 기인한 비구조적인 현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 폐지가 세수의 손실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의 결과로 GDP 대비 세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을 1969년부터 2018년까지 호주의 GDP 대비 총세금 수입의 연도별 현황을 제시하는 <표 6>에서 파악할 수 있다.

<표 6> 호주 GDP 대비 총세수 연도별 추이

(단위 : %)

연도	세수	연도	세수
1969	20.708	1994	27.507
1970	21.099	1995	28.285
1971	21.851	1996	28.924
1972	21.408	1997	28.666
1973	22.498	1998	29.432
1974	24.637	1999	29.805
1975	25.374	2000	30.458
1976	25.554	2001	28.927
1977	25.421	2002	29.800
1978	24.529	2003	29.963

41) Trading Economics, “Australia Employment”, <https://tradingeconomics.com/australia/indicators>(검색일 : 2021. 11. 5.).

연도	세수	연도	세수
1979	25.150	2004	30.271
1980	26.211	2005	29.975
1981	26.383	2006	29.390
1982	26.857	2007	29.520
1983	26.109	2008	26.827
1984	27.707	2009	25.532
1985	27.759	2010	25.268
1986	28.536	2011	25.888
1987	28.642	2012	26.909
1988	28.297	2013	27.109
1989	28.014	2014	27.271
1990	28.108	2015	27.901
1991	26.667	2016	27.618
1992	26.134	2017	28.498
1993	26.604	2018	28.679

자료 : OECD Tax Revenue.⁴²⁾

42) OECD Data, "Taxrevenu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tax-revenue.html>
(검색일 : 2021. 11. 5).

VI. 결 론

본 연구에서 고찰한 사례 국가들(i.e., 스웨덴, 이스라엘, 캐나다 및 호주)은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기존 과세하던 상속 및 증여세를 전면 폐지하였다. 그 결과, 고찰한 모든 사례 국가들의 상속·증여세 폐지는 국가 경제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모든 사례 국가들이 상속·증여세의 대체적 폐지 이후, 세수 상의 유의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본 연구는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폐지는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중의 하나로 작용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규모(pie)를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로의 대체 시행은 본 사례연구에서 고찰한 4개국(i.e., 스웨덴,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이외에도, 여타 세제혁신적인 OECD 여타 국가(e.g.,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⁴³⁾ 이들 국가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도 세수 상의 유의한 감소가 없고 오히려 늘어났으며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업투자의 촉진을 통해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제고되고 있었다. 또한, 자본이득세는 투명하여 세금 누수가 없고 징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소득이 실현된 시점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조세징수 원칙에도 부합한다.

본 사례연구의 고찰 대상 국가들은 모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국가균형발

43) 뉴질랜드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는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세진·김준현(2021)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을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 수도권 집중화가 50%를 이미 넘어버린 한국의 심각한 국가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본 장에서 고찰한 사례 국가의 상속 및 증여세의 대체적 폐지(i.e., 자본이득세로의 시행)와 관련한 정책적 배려,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발전적인 벤치마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고영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캐나다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관련 연구”, 한-캐나다 비즈니스 협회 훈련보고서, 2019.
- 김석진·김진수·이현철·임상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 김진수·임상수·김석진·이현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지역별 차등 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경영연구』 제38권, 한국산업경영학회, 2023.
- 전태영·이윤주, “가족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38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7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 이세진·김준헌,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
- 이현철·김석진·임상수·김진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차등화와 국가균형발전”, 『기업과 혁신연구』 제47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4.
- 현진권,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 아주대학교 세미나 논문집, 2010.

2. 해외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s://www.abs.gov.au/>).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s://www.timesofisrael.com/topic/central-bureau-of-statistics/>).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html>).
-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https://www.finance.gov.au>).
- Eurostat, European statistics (https://commission.europa.eu/about-european-commission/departments-and-executive-agencies/eurostat-european-statistics_en).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

Israel Ministry of Finance (https://www.gov.il/en/departments/ministry_of_finance/govil-landing-page).

The Jerusalem Post (<https://www.jpost.com/>).

Tax revenue-OECD Data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tax-revenue.html>).

Six Charts on Canada's Economic Outlook for 2019 (<https://www.statcan.gc.ca/en/start>).

Statistics Canada (<https://www.statcan.gc.ca/en/start>).

Statistics Sweden (<https://www.scb.se/en/>).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agencies/swedish-national-financial-management-authority/>).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

World Bank Group, International Development, Poverty, & Sustainability (<https://www.worldbank.org/ext/en/home>).

World Economic Forum, 2020.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9.

<Abstract>

Economic Effects of Repeal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Sangsoo Lim* & Seokchin Kim** & Jinsu Kim*** & Hyunchul Le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overseas countries such as Sweden, Israel, Canada, and Australia whose inheritance and gift taxes are repealed and capital gains taxes are alternatively introduced. Our case study confirms that repealing inheritance and gift taxes ha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without reducing tax revenues of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reviewed.

Our study reports that the repeal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causes no problem in securing and operating stable national finances. Rather, we document that the replacing inheritance and gift taxes with capital gains taxes works as one of key drivers for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substantially enlarging the overall economic size of the countries reviewed. Importantly,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our case countries are ones successfully achieving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etween the metropolitan (i.e., national capital) and local regions. Our study sheds insightful implications on resolving or alleviating the current serious imbalanced development and ensuring the stable social integration and sustainability in Korea whose metropolitan area concentration has already exceeded a fifty percent.

▶ **Key Words** : inheritance and gift tax, capital gains tax, repeal, economic performance, case study

* Primary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osun University

** Co-Author : Professor Emeritu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